

『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0월 9일

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- 구포매립장이 2007. 12. 31일자로 매립 종료되어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구포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포복지관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제명 :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⇒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
- 주민지원기금조성 불가로 구포복지관의 운영 방안 명시
 - 구포복지관의 사업내용 명시(신설 제4조)
 - 구포복지관의 사용료 산정 방법 구체적 명시(신설 제5조)
 - 구포복지관 운영 위탁기간(3년이하) 명시(신설 제8조제3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의거 설치된 구포복지관이 2007. 12. 31일자로 구포매립장의 매립 종료로 인해 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구포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주민지원 기금조성 불가에 따라 구포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함(안 제4조)
- 기존의 주민지원협의체 존속 보장이 없음에 따라 구포복지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방법 명시함(안 제5조)
- 구포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을 3년 이하로 명시함(안 제8조제3항)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설치된 구포복지관이 구포매립장의 2007. 12. 31자 매립 종료로 인해 주민지원 기금 조성 및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구포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